



제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항공정비사 피로관리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93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 목 차

|                               |   |
|-------------------------------|---|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2208293)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항공정비사 피로관리(안 제56조 등) ..... | 2 |
| 가. 검토의견 .....                 | 4 |
| 나. 국토교통부 의견 .....             | 7 |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2208293)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5. 2. 20.
3. 회 부 일 : 2025. 2. 2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 Ⅲ. 검토의견

#### 1. 항공정비사 피로관리(안 제56조 등)

| 현행                                                                                                                                              | 개정안                                                                                                                    |
|-------------------------------------------------------------------------------------------------------------------------------------------------|------------------------------------------------------------------------------------------------------------------------|
|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u>운항관리사</u> 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br>-----<br>-----<br>-----<br>-----, <u>운항관리사</u><br><u>및 항공정비사</u> -----<br>-----.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u>운항관리사</u> 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 1. -----<br>-----<br>-----<br>----- <u>운항관리사</u><br><u>및 항공정비사</u> -----<br>-----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u>운항관리사</u> 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u>운항관리사</u> 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③ -----<br>-----<br>----- <u>운</u><br><u>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u> -----<br>-----<br>----- <u>운항관리사 및 항공정비사</u> -----<br>-----. |
|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br>-----                                                                              |

| 현행                                                                                                                                                                                                                                                                                                                                                                                                                                                                                                    | 개정안                                                                                                                                                                                                                                                                                                                                                                                                                                                        |
|-------------------------------------------------------------------------------------------------------------------------------------------------------------------------------------------------------------------------------------------------------------------------------------------------------------------------------------------------------------------------------------------------------------------------------------------------------------------------------------------------------|------------------------------------------------------------------------------------------------------------------------------------------------------------------------------------------------------------------------------------------------------------------------------------------------------------------------------------------------------------------------------------------------------------------------------------------------------------|
|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16. (생략)</p> <p>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p> <p>18. ~ 49. (생략)</p> <p>② (생략)</p> <p>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1의2.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p> <p>2. ~ 15. (생략)</p> <p>② ~ ⑦ (생략)</p> | <p>-----<br/>-----<br/>-----<br/>-----<br/>-----<br/>-----<br/>-----.</p> <p>1. ~ 16. (현행과 같음)</p> <p>17. -----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br/>--</p> <p>18. ~ 4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6조(과태료) ① -----<br/>-----<br/>-----.</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br/>-----승무원이나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정비사-----<br/>-----</p> <p>2. ~ 15.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하여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피로 관리 의무가 마련된 것임.

그러나 승무원과 운항관리사뿐만 아니라 항공정비사의 경우에도 피로 누적 시 정비 오류를 유발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특히 현재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정비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항공정비사에 대한 피로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항공안전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도 현행법 제77조 및 이에 따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비사의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고,<sup>1)</sup> 이를 위반하여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

1) 「항공안전법」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고,**<sup>2)</sup> 이를 갈음하는 최대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sup>3)</sup>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항공정비사 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해당 운항기술기준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거나 현행 운항기술기준 상 최대근무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시에 따른 최대 근무시간의 적절성과 그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항공안전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3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38호까지 또는 제40호부터 제4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3」

보.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2) 비행규칙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국제항공운송사업(400백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80백만원), 소형항공운송사업(40백만원), 항공기사용사업(11백만원)

「항공안전법 시행령」 「별표35」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보목2)·3) 및 이 규칙 별표 34 소목2)·3)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64)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휴식시간 또는 연속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정비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9.3.4.2 】

9.3.4.2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요원의 임무와 휴식의 제한 (Rest and Duty Limitations for Persons Performing Maintenance Functions on AOC Holder Aircraft)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임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1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는 아니 된다.

다. 고장등으로 인해 항공기의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운항증명소지자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근무제한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 16시간 연속 근무
- 2) 1일에 20시간의 근무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다항에 따른 비계획적인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마. 운항증명소유자는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연속 7일 중에 연속 24시간 동안 업무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월간단위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업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나. 국토교통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칙으로 기 시행중인 항공정비사 피로관리 제도를 법령으로 상향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여 정비사의 피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 제도와 현행 행정규칙의 조화를 이루고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비추어 법으로의 상향 필요성에 동의함.

한국항공협회는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비인력에 대한 근무계획, 인력운영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며 정비인력의 피로관리를 이행 중이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14 CFR Part 117」에서도 항공정비사는 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외항사에게도 동일하게 의무가 적용되므로 국내법과 국제기준 괴리에 따른 혼선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80 |